##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안]

# 제안이유

도메인이름, 인터넷프로토콜주소 등 인터넷주소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소자원의 관리와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 현행 법률 제정으로 정부주도의 관리체계가 정립되었음. 인터넷 주소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할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게 부여하더라도, 주소자원의 일상적인 관리와 정책 논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민간 중심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심의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각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상향식으로 구성하고, 그 아래에 각 이해당사자의 다자간 정책협의기구인 인터 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을 각 이해당사자별 추천을 받아

- 1 -

서 상향식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로 고르게 구성하고자 함(안 제6 조).

나.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의2).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 "1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홍원 등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련 분야 를 전공하 자
  - 3.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 체
  - 6. 기타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

는 자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반영, 안건 심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인터넷주소정책실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촉 등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실무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혀 행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① ~ ② (생 략)

- 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 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자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 공한 자

# 개 정 안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하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 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위촉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 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 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 공기관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관

-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
-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 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련 분야를 전공한 자

- 3.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 는 자
- 4.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 터넷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 6. 기타 인터넷 및 인터넷주소 자원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자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 하여야 한다.
- ⑥ (현행 ⑤항과 같음)

제6조의2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 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반영, 안건 심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인 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촉 등 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 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 ④ 실무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의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적극 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